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116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5. 10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자치분권 기본방향(안 제3조)

-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전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 보장

나.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(안 제5조)

-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
-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

다. 자치분권협의회 설치(안 제6조)

-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함.

라. 자치분권협의회 기능(안 제7조)

-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
-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

마.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(안 제11조)

바. 기타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
및 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

(4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5. 9. 1. ~ 9. 21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5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자치분권”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,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방향)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, 시행,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4조(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2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

2.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
3.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
4.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·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,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각 호선하고, 위원은 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구성원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2.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7조(협의회의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
2.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
3.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의장 또는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4.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8조(의장의 직무 등)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제10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협의회에 대한 지원)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 1**관계법령**

□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, 제7조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·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방분권의 기본이념)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.